

충청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

제안이유

- 소방법개정(법률제4419호, '91. 12. 14)으로 소방업무의 수행책임이 시장
· 군수에서 도지사로 전환됨에 따라 현행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를 정
비키 위함

주요골자

- 소방업무에 대한 도지사의 권한을 관할 소방서장 및 소방서 미설치지역
의 관할군수에게 위임

근거법령

- 소방법 제3조, 부칙 제1조, 제2조
- 지방자치법 제95조

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신구조문대비표

조례명 :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

현	황	개	정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중 일부를 <u>소속시장</u> <u>군수 및 출장소장</u> 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	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중 일부를 <u>소속시장</u> <u>군수 및 출장소장 소방서장</u> 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	
제2조(권한의 위임사항) 도지사가 관장하는 <u>사무중 시장 군수 출장소장</u> 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.		제2조(권한의 위임사항)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중 <u>시장 군수 출장소장 소방서장</u> 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.	
제5조(위임 및 처리의 금지) <u>시장 군수 출장소장은</u>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 전결하게 하거나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.		제5조(위임 및 처리의 금지) <u>시장 군수 출장소장 소방서장은</u>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 전결하게 하거나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.	

신 구조문 대비표

별표(소방과소관사무)

일련 번호	현		개	
	사무명	근거법령	사	무 명
1	(생략)	소방법 제42조 제 3항 동법 시행령 제18조	(현행과 같음)	소방법 제42조의 5 동법시행규칙제18조 동법 제42조의 14 제1항
2	(생략)	동법 제42조 제12 항 동법 시행규칙 제21조	(현행과 같음)	동법시행령 제28조의 4 동법시행규칙 제21조
3	신설		• 화재의 예방조치 명령권	소방법 제4조
4	신설		• 소방대상물의 검사권	동법 제5조
5	신설		• 소방활동에 필요한 조사권	동법시행규칙 제1조 제2항 제3항
6	신설		• 소방대상물의 개수명령권	동법 제7조
7	신설		• 건축허가등의 동의권	동법 제9조
8	신설		• 방화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	동법 제10조, 동법 시 행규칙 제5조
9	신설		• 공동방화관리대상지정 및 현 외사항신고	동법 제11조
10	신설		• 소방관계자의 교육 미필자에 대한 해임명령및 해임 권고권	동법 제70조의 9 제2항
11	신설		• 방화관리자등의 실무교육	동법 시행규칙 제73조
12	신설		• 방염후처리 물품에 대한 방염 성능의 검사권	동법 시행규칙 제9조
13	신설		• 위험물의 임시저장 취급 승인권	동법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의 2

일련 번호	행		정	
	사무명	근거법령	사 무 명	근 거 법 령
14	신설		• 위험물제조소등의 설치 허가권	• 소방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동법시행규칙 제48조
15	신설		• 위험물 취급주인 또는 위험물 취급자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	• 동법 제18조 동법 시 행규칙 제56조
16	신설		• 예방규정의 인가권	• 동법 제20조 동법시행규칙 제59조
17	신설		• 위험물 제조소등의 감독권	• 동법 제22조
18	신설		• 위험물제조소등의 허가취소, 사용정지명령권	• 동법 제23조
19	신설		• 무리가 위험물 시설등에 대한 조치명령권	• 동법 제26조
20	신설		• 위험물제조소등의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에 관한 권한	• 동법 시행령 제37조 의 2
21	신설		• 위험물제조소등의 양수신고	• 동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38조 동법시행규칙 제52조
22	신설		• 자체소방조직의 지도, 감독권	• 동법시행규칙 제60조
23	신설		• 소방시설 설치유지에 관한 명 령권	• 동법 제29조 제2항
24	신설		• 소방시설기준적용의 특례에 관한 권한	• 동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4조
25	신설		• 소방설비공사의 시공신고 및 완공검사권	• 동법 제42조의 12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3조
26	신설		• 화재 위험경보 발령권	• 동법 제44조 제1항
27	신설		• 화재위험 경보발령시 불의사 유제한권	• 동법 제44조 제2항
28	신설		• 화기취급의 금지 제한권	• 동법 제45조

일련 번호	행		경	
	사무명	근거법령	사 무 명	근 거 법 령
29	신설		• 화재 경제지구에 대한 소방상 조치 명령권	• 동법 제46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30조
30	신설		• 방화경계구역의 설정권	• 동법 제52조
31	신설		• 방화경계구역 출입금지 제 한권	• 동법시행규칙 제45조
32	신설		• 소방용원 요청, 지휘권	• 동법 제53조 동법시행령 제31조
33	신설		• 소화종사 명령권	• 소방법 제54조
34	신설		• 소방대상물동에 대한 강제처 분권	• 동법 제55조
35	신설		• 화재로인한 피난명령권	• 동법 제56조
36	신설		• 화재현장의 급수유지의 긴급 조치권	• 동법 제57조
37	신설		• 소방용수시설의 지정권	• 동법 제42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
38	신설		• 화재 원인과 피해재산 조사권	• 동법 제58조
39	신설		• 강제조사권	• 동법 제59조
40	신설		• 경찰에 의하여 체포원자에 대 한 조치권	• 동법 제60조
41	신설		• 화재조사에 대한 상호협력	• 동법 제61조 동법 제62조
42	신설		• 청원소방원의 배치 결정권	• 동법 제68조의 2 동법 시행령 제42조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의 2

일련 번호	현 행		개 정	
	사무명	근거법명	사 무 명	근 거 법 명
43	신설		• 청원소방원의 지도·감독	• 동법시행령 제47조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의 4
44	신설		• 청원소방원 직무교육 실시권	•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의 3
45	신설		• 청원소방원의 운영관리	•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의 6
46	신설		• 구급대의 편성 운영권	• 동법 제70조의 10
47	신설		• 구급대원의 임명	• 동법시행령 제48조 제2항
48	신설		• 구조대의 편성 운영권	• 동법시행령 제48조 제2항 동법 제70조의 11
49	신설		• 구조대원의 임명권	• 동법 시행령 제49조 2 제2항
50	신설		• 구조활동의 지원요청권	• 동법시행령 제49조3
51	신설		• 청문권	• 동법 제70조의 12
52	신설		• 파태표부과, 징수권	• 동법 제78조 제2항, 동법시행령 제64조

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○ 위원장대리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전문위원 민귀식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.

(참 조)